

취업브리지 사업단 평가위원회 규정

제정 2019.09.02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취업브리지 평가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 이라 한다)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.

- ① 사업단의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·평가·환류에 관한 사항
- ② 사업의 제도와 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
- ③ 기타 사업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장 조직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 위원장은 취업브리지사업단장으로 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은 각 사업 해당 스쿨의 원장, 산학협력단장, 사업책임교원과 기타 사업단장이 추천한 전임교원 및 기업 담당자로 구성한다.

③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사업단 담당 직원이 담당한다.

제4조(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1년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3장 회의

제5조(회의 및 의결정족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중간점검과 최종평가로 구분한다.

②중간점검은 전문교과과정이 종료되는 시점과 최종평가는 현장실습 종료되는 시점에 회의를 개최한다. 임시회는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1.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2.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
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심의절차)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

을 각 위원에게 서면 혹은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.

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부서에 자료제출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록 작성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8조(전문위원 및 자문위원)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정의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참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.

②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은 각 호에 자문을 할 수 있다.

1. 산업체와 전공교과과정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
2. 전공교과과정 편성·운영에 관한 사항
3. 사업평가에 대한 평가기준
4. 기타 사업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비밀유지) 위원,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장 기타

제10조(기타)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9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.